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3. 9 선고 2021가단38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명훈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3.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3. 19. 접수 제154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C 유한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27821호 양수금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는 C 유한회사에게 62,283,482원 및 그 중 16,278,468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른 C 유한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와 같은 지급명령은 2018. 6. 26. 확정되었다.
- 2) C 유한회사는 2018.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 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3) B는 2020. 3. 19.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9872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B의 채권자로 B는 2020. 3. 19.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D파의 종중임야로서 종중의 장인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장손인 피고가 바로 상속받아야 하나, 피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2000. 12. 24. 당시 종중의 장이 된 피고의 나이가 어려 어머니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다시 장손인 피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피고에게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D파의 종중임야라거나, D파가 나이 어린 장손인

피고를 대신하여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는 2018.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1984년생으로 위 2018. 12. 3.경 30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별지